

제183회 영등포구의회  
2014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9. 2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11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도로법」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 
조문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근거  
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도로법」 개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인  
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(안 제1조, 제3조제1항)
- 나.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 
이의신청에 관하여 「도로법」 제94조 준용(안 제4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도로법」 제91조, 제94조

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타구개정 : 서울시, 강동구 외 3개구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」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  
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「도로법」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,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「도로법」 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.
- 「도로법」의 전부개정(2014. 1. 14, 시행 2014. 7. 15)과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가 개정·시행(2014. 7. 17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도로법』

**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**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**제94조(비용의 징수 방법 등)**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점용료"는 각각 "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"으로 본다.